



## 부록 | 모의고사 지문 분석

2024학년도 시준4 제2차 이감 국어 모의고사 지문 분석을 수록하였습니다.

독서 \_\_\_\_\_ 92쪽

문학 \_\_\_\_\_ 98쪽

[4~9] 인문 통합

## 주자와 이의의 자연학

✔ 지문 평가

평이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 크게 어렵지는 않다. (가)에서 '주자'의 관점이 나머지 두 관점과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파악하였다면, (나)에서는 '이의'의 관점이 앞선 '주자'의 관점과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잘 읽어 내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 키워드

(가) 인문 - 동양 철학 - 주자, 장재, 정이

유학, 천인합일, 주자, 자연학, 장재, 기, 기화, 기일분수, 이, 정이, 이일분수, 대대적 이기론, 재이

(나) 인문 - 동양 철학 - 이의

이의, 가치 세계, 자연 세계, 대기, 소기, 형기, 전통적 재이관, 합리적 입장

(가) 문단 1 주자의 자연학

- 1) 유학의 근간을 이루는 천인합일(天人合一) 사상에 따르면 복잡 다양한 자연의 운행을 설명하는 법칙은 인간 사회를 관통하는 도리와 다르지 않다.

▶ '천인합일'은 '유학'이 취하는 기본적인 입장이다. '자연법칙=도리'라고 간명하게 이해하자. 여기서 '도리'란 도덕 법칙과 같은 의미로 알아두면 충분하다.

- 2) 이러한 관점에서 유학의 이론들을 집대성하여 주자학을 정립한 송대(宋代)의 주자는 그 집대성의 과정에서 동시대의 장재와 정이의 이론을 접목하여 그들의 자연학까지 아우르고자 하였다. 장재와 정이는 모두 유학에 뿌리를 두면서도 자신만의 자연학을 세웠던 인물들이다.

Ⓞ 맥락 읽기 이 글의 초점은 '유학'을 집대성하여 만들어진 '주자학'을 이해하는 데에 있으며, 주자학 역시 '자연 법칙=도리'라는 입장을 취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장재, 정이'의 관점이 어떤 식으로 반영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가) 문단 2 장재와 정이의 자연학

- 1) 장재는 만물을 구성하는 물질적 요소인 기(氣)를 중심으로 자연을 이해하여, 자연의 본체인 '기'는 하나로서 영원하며 그 다양성은 '기'의 변화인 기화에 기인한다는 기일분수(氣一分殊)를 주장하였다.

▶ 먼저 '장재'의 관점이다. 장재는 '기'에 주목하였고, 물질적 요소인 기의 변화[→ 기화]에 의해 만물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종합하여 '기일분수'라는 개념을 내세웠다.

- 2) 그는 인간을 포함한 자연의 모든 현상이 기화에서 유래하며, 그렇게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법칙을 이(理)라 보았다. 다만 그에 따르면 '이'는 기화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에 종속된 것이다.

※ 주목 장재는 기화의 법칙이 '이'라고 보았다. 다만 법칙인 '이'가 '기'를 주도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기화의 법칙[→ 이(理)]도 어디까지나 자연의 본체인 '기'에 종속된 것이기 때문이다.

- 3) 반면 정이는 '이'를 중심으로 자연을 이해하였다. 그는 '이'가 자연 법칙일 뿐 아니라 도덕 법칙인 천리(天理)라 여겼다. 그래서 '이'는 하나이며 사물의 다양성은 '이'가 여러 사물에 구현됨으로써 발생한다는

이일분수(理一分殊)를 제시하였다.

▶ '정이'의 관점이 주어졌다. '정이'는 '기'에 주목한 장재와 달리 '이'에 주목하였다. '자연법칙=도덕 법칙[→ 도리]=이'라고 본 것이다[문단-1]}. 또한 '사물의 다양성'에 대하여 '장재'는 기의 '변화' 때문이라고 보았다면[→ 기일분수], '정이'는 '이'가 여러 사물에 구현되기 때문이라고[→ 이일분수] 보았다.

- 4) 그 역시 만물의 생성과 변화는 기화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으나 이를 주관하는 것은 '기'가 아니라 '이'이며, '기'는 개별 사물과 그 생성, 소멸을 함께한다고 여겼다.

▶ '정이'는 '장재'와 마찬가지로 '기화'에 의해 만물이 변화한다고 보았으나, 그것을 주관하는 것이 '이'라고 보았다. 즉 '기'는 어디까지나 사물을 구성하는 물질적 요소에 불과하며, 그 사물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 주목 장재와 정이의 두 관점을 구분하여 이해하면 다음과 같다.

|            | 장재                 | 정이                 |
|------------|--------------------|--------------------|
| 기          | 자연의 본체             | 물질적 요소             |
| 이          | 기화의 법칙             | 천리                 |
| 사물의 다양성    | 기일분수               | 이일분수               |
| 만물의 생성과 변화 | 기화<br>[→ 기(氣)의 주관] | 기화<br>[→ 이(理)의 주관] |

(가) 문단 3 주자의 대대적 이기론

- 1) 주자는 두 인물의 이론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이'와 '기'의 개념이란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것으로, 둘을 통합적으로 이해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대대적(對待的) 이기론을 확립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는 '기' 없이 존재할 수 없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이므로 자연의 모든 개체는 '이'와 '기'가 통합된 존재이다.

▶ 장재와 정이의 관점을 아우른 '주자학'에서는 '대대적 이기론'을 내세운다. '장재'처럼 '기'만을 강조하지도 않고, '정이'처럼 '이'만을 강조하지도 않았다. 이 둘은 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항상 함께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 장재    | 정이    | 주자    |
|-------|-------|-------|
| 기 > 이 | 이 > 기 | 이 & 기 |

- 2) 주자는 천리로서 '이'는 하나이고 모든 개체에 본성으로 내재해 있지만 개체가 지닌 '기'의 특수성으로 인해 개체의 다양성이 생겨난다는 의미로, 정이와는 다른 이일분수를 주장하였다.

▶ 주자는 '이'에 대해서는, '이'를 강조한 정이의 이론을 주로 취하였다. '이'를 천리로 이해하면서, 그것을 만물의 본성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문단2-3]}. 다만 만물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이일분수'를 취하되, 정이와 달리 '이'가 아닌 '기'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정이와는 다른' 이일분수를 주장한 것이다.

- 3) 그는 인간과 동식물, 그리고 같은 인간일지라도 개인마다 '기'가 다른 데서 자연적, 도덕적 차이가 발생하고 그 '기'의 특성에 따라 인욕의 지나침과 같은 '악'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주자에 따르면 이러한 '악'은 본성인 '이'로 극복해야 한다.

▶ 모든 개체의 본성이 '이'라는 것은, 모든 개체가 '천리[→ 자연법칙, 도덕 법칙]'를 본성으로 갖추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그럼에도 개인마다 자연적, 도덕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기'의 차이 때문이다. 즉 동일한 본성이 개체의 차이로 인해 달리 드러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악'은 '기'의 탓이므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천리인 '이'를 통해야만 한다는 것이 주자의 주장이다.

(가) 문단 4 주자의 자연학의 성격

1) 주자의 자연학은 자연 자체에 대한 독립적인 이해보다는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수단의 성격을 띤다. 자연과 인간은 동일한 원리를 따르므로 자연의 이해를 통해 인간의 존재 근거와 도덕적 당위를 도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 '자연학'은 본래 그 자체로 자연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지만, 주자학에서는 이를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까지 확장하게 된다.

※ 주목 주자학에서는 만물의 본성을 천리인 '이'로 보는데[문단3-2], 천리는 자연법칙이면서 도덕 법칙이다[문단2-3]. 따라서 자연과 인간은 '동일한 원리'를 따르고, 인간은 도덕 법칙을 그 본성으로 내재하고 있으므로, '도덕적 당위'도 도출되는 것이다.

2) 그런데 이러한 태도 안에는 그의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 그는 일식 등의 **재이(災異)**가 인간사와 무관한 자연 현상이라 보면서도, 왕권을 견제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에서 군주를 비롯한 인간의 근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재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 주자가 이렇게 자연과 인간을 동일한 원리로 묶어서 이해한 것은 그의 정치적 의도와 달아 있다. 그는 '재이'가 자연 현상에 불과하다[→ 인간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았지만, 동시에 이를 인간과 연결 지어 재이가 발생하면 인간의 근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왕권 견제'라는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자연 현상을 끌어들이어 왕권 견제 등의 의도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연과 인간이 동일한 원리로 묶인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나) 문단 1 자연과 인간을 분리해 분석한 이익

서양 과학의 영향을 받은 실학자 이익은 인간의 도덕규범과 같은 가치 세계를 자연 세계와 엄격히 구분했다. 그의 『성호사설』에 따르면 도덕을 논의하려면 감정이 있어야 하는데 천지 초목에는 감정이 없고 자연법칙만이 있다. 자연은 도덕과 무관한 '기' 자체의 법칙에 따라 운영된다고 여겼던 것이다.

☞ 맥락 읽기 통합 지문을 읽을 때에는 (나)를 읽으면서 (가)의 내용을 의식적으로 끌어올 수 있어야 한다. (가)의 '주자'는 자연과 인간을 동일한 원리로 이해했다. 반면 (나)의 '이익'은 자연과 인간을 엄격하게 구분했다. 따라서 '이익'의 주장이 앞선 '주자'의 주장과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의식할 필요가 있다.

| 주자                            | 이익                            |
|-------------------------------|-------------------------------|
| 자연 세계 = 가치 세계<br>자연법칙 = 도덕 법칙 | 자연 세계 ≠ 가치 세계<br>자연법칙 ≠ 도덕 법칙 |

➡ '이익'에 따르면 자연법칙은 '도덕'과 무관한 것이며, 오로지 '기' 자체의 법칙을 따른다. 즉 자연은 오로지 '기'에 의해 운영되지, '이'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반면 '주자'는 만물의 본성이 '이'라고 보았다는 점에서, 자연의 본성도 '이'라고 보았다[(가)의 문단3].

(나) 문단 2 이익의 인간에 대한 해석

1) 그런데 이익은 인간이 자연 세계에 속해 있으면서 가치 세계에도 속해 있는 존재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 '이익'은 자연은 자연 세계에만 속해 있다고 설명한다. 즉 가치 세계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반면 인간의 경우는 '가치 세계'에도 속하므로, 자연 세계에만 속하지는 않는다. 즉 자연과 달리 '기'의 법칙만 따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에 따르기도 한다는 뜻이겠다.

| 인간을 제외한 만물   | 인간                           |
|--------------|------------------------------|
| 자연 세계[→ '기'] | 자연 세계[→ '기']<br>가치 세계[→ '이'] |

2) 그는 이를 **대기(大氣)**와 **소기(小氣)**로써 설명한다. 천지의 관점에서 대기는 천지를, 소기는 개체를 흐르는 '기'이고 개체의 관점에서 대기는 개체 전체를, 소기는 개체의 부분을 흐르는 '기'를 말한다.

➡ '대기'와 '소기'의 개념이 주어졌다. '기'를 두 개념으로 구분하여 설명한 것이다.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 대기              | 소기              |
|----|-----------------|-----------------|
| 천지 | 천지              | 개체를 흐르는 '기'     |
| 개체 | 개체의 전체를 흐르는 '기' | 개체의 부분을 흐르는 '기' |

3) 이익은 인간을 포함한 만물이 천지의 대기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소멸한다는 점에서 개체의 대기는 천지의 대기와 다름없으며 자연 세계에 속하는 것이라 보았다.

➡ 개체는 천지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개체의 대기'는 사실상 천지[→ 천지의 대기]이기도 하다. 그러한 점에서 인간은 '자연 세계'에 속한다.

4) 다른 한편 개체의 대기는 천지의 소기라는 점에서 개체마다 고유한 형체를 채우고 있는 **형기(形氣)**이기도 한데, 특히 인간의 형기는 욕구와 감정의 원천으로 가치 세계와 관련을 맺는다.

➡ 반면 '개체의 대기'는 개체의 전체를 흐르는 '기'라는 점에서 '천지의 소기'이기도 하다. 즉 개체를 흐르는 '기'라는 점에서, 인간이 갖는 고유한 '형기'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는 '가치 세계'와 달아 있다는 점에서, 인간은 '가치 세계'에 속하기도 한다.

(나) 문단 3 인간의 형기

이익에 따르면 만물의 형기는 그 형체와 생사를 같이한다. 다만 이익은 형체가 소멸하면 형기가 소멸할 뿐 '기'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형기는 **인심(人心)**에서 비롯된 인욕이나 감정의 지나침 같은 '악'을 낳아 자신과 사회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데, 본성인 '이'가 순수하게 드러난 도덕적 마음인 **도심(道心)**과 도심의 원천인 인의예지의 **사단(四端)**으로 이를 극복해야 한다.

➡ 인간의 형기에 대한 설명이므로, 이는 가치 세계와 달아 있는 설명이다. 인간의 형기는 '악'을 낳을 수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심'과 '사단'을 활용해야 한다.

※ 주목 '도심'과 '사단'은 모두 '이'와 관련 있으므로, 결국 본성인 '이'로 악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가)의 주자와 주장을 같이 하고 있다. 인간의 본성을 '이'로 보았다는 명시적 설명에도 주목하자.

(나) 문단 4 이익이 재이를 해석하는 태도

1) 이익은 나아가 대기를 통해 인간과 자연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기에 재이에 올바르게 대응할 것을 강조하였지만, 그 태도는 사뭇 **이중적**이었다. 한편으로는 서양의 자연 과학의 영향을 받아 하늘의 운행과 해와 달의 궤도는 일정하여 인간이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하면서도, ……

➡ 이익에 따르면 '개체의 대기'는 '천지의 대기'와 다르지 않다[문단2-3]. 즉 인간도 자연 세계에 속하므로, 일식 등의 '재이'에 올바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었다.

2) …… 다른 한편으로는 군주를 포함한 인간들이 조심하며 덕을 쌓아 하늘을 감동시키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수 있다는 **전통적 재이관**을 드러내기도 하였던 것이다.

▶ 재이는 어디까지나 자연 현상이므로, 인간과는 무관하다고 보면서도[문단],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 세계와 가치 세계를 구분하지 않고, 인간이 재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가)의 '주자'가 취한 모습과도 비슷하다[(가)의 문단4-2].

3) 그의 자연학 안에는 하늘을 **인격적 주재자**가 아니라 **자연의 이치**로 간주하여 자연법칙에 따라 재이에 대처하자는 **합리적 입장**과, 하늘을 공경의 대상으로 삼는 도덕적 인간만이 천지자연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전통적 재이관이 공존하고 있다.

▶ 이익의 자연학에 따르면 하늘은 분명히 '기' 자체의 법칙에 의해 운영된다[문단]. 따라서 도덕과는 관련이 없으며, 하늘은 '자연의 이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적 재이관'도 취하고 있었다는 마무리다.

## <보기> 분석

### <보기> 문단

1) 천지는 '기'의 운수인 **기수**에 따라 변하는데 낮은 밝고 밤은 어두운 것이 정상이다. **이변**[→ 재이]이란 기수의 변고로, 정상적인 것은 길하고 변고는 흉하다. 천지가 면할 수 없는 변고라 할지라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다.

◀▶ 맥락 짚기 발문을 참고할 때, (보기)는 (나)에 제시된 『성호사설』의 일부이므로 '이익'의 입장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기', '재이' 및 인간에 대한 태도 등을 비교하고, 더 나아가 이를 (가)의 장재, 정이, 주자의 이론과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 천지는 '자연 세계'에 속하므로, '기' 자체의 법칙에 의해 운영된다[(나)의 문단]. 즉 도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 '장재'가 제시한 기화의 법칙은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익'에 따르면 천지는 '이'와 무관한 '기'의 법칙에 따라 운영된다. 따라서 ①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2) …… 만물은 천지에서 태어났지만 오직 인간만이 도덕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 만물이 천지에서 태어났다는 점에서 '천지의 대기'는 '개체의 대기'와 다르지 않다. 다만 '개체의 대기'는 '천지의 소기'라는 점에서, 인간의 형기는 가치 세계와 관련을 맺는다[(나)의 문단2-4]. 그래서 인간만이 도덕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3) …… 뱃사공은 풍향에 어두우면 바람에 밀려가거나 가라앉게 될 것이다. 풍향 자체가 하늘의 경고로서 재이란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경고라 하여 하늘이 어찌 생각이 있어서 이것을 알려 주겠는가?

▶ '재이'를 '풍향'으로 비유하고 있다. 뱃사공이 풍향에 유의해야 하듯이, 우리도 그에 유의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 주목 중요한 것은, 재이가 비록 '경고'라도, 하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곧 하늘이 '인격적 주재자'가 아니라, 자연의 이치일 뿐이라는 '합리적 입장'에 부합하는 설명이다[(나)의 문단4-3].

## [10~13] 기술

# 클라우드 컴퓨팅과 하이퍼바이저

### 지문 평가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본적인 원리를 소개하는 평이한 글이다. CPU와 메모리의 할당이 각각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그대로 이해하면 그만이다.

### 키워드

#### 기술 - 컴퓨터 과학 -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외부 서버, 가상 머신(VM), 하이퍼바이저, CPU, 가상 CPU, 코어, 초과 할당, 중요도, 페이지, 메모리, 풍선 드라이버

## 문단 1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은 사용자의 컴퓨터가 아닌 **외부 서버**의 자원을 빌려 작업을 처리하는 기술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자는 서버의 자원 중 일부를 할당받아 생성된 가상의 컴퓨터인 **가상 머신(VM)**을 사용한다. 이를 위해 서버의 CPU와 메모리 자원이 VM들에 적절히 분배될 필요가 있는데, **하이퍼바이저**라는 소프트웨어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이를 수행한다.

▶ '클라우드 컴퓨팅'은 외부 서버의 자원인 CPU와 메모리를 활용하는 기술이다. 즉 사용자 컴퓨터의 CPU와 메모리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 맥락 짚기 다만 각각의 VM은 자원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할당받으므로, '하이퍼바이저'가 서버의 자원을 어떻게 VM들에 '분배'할지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하이퍼바이저가 어떠한 '규칙'에 따라 서버의 자원을 VM들에 분배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문단 2 CPU의 할당

1) **CPU**는 컴퓨터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연산 장치**로서, 하나의 서버에는 다수의 CPU들이 설치되어 있다. CPU는 일정 시간을 단위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개별 연산 작업들을 수행하는데, 이는 CPU에 속한 **코어**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 하나의 서버는 다수의 CPU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의 CPU는 다수의 코어들로 이루어져 있다. 실제 연산을 수행하는 것은 그중에서도 '코어'이다.

2) 하이퍼바이저는 사용자가 요구한 만큼에 해당하는 코어들을 VM의 **가상 CPU**에 할당한다. 이는 일정 개수의 특정 코어들을 개별 VM에 고정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당 VM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코어의 최대 개수를 지정하는 것을 뜻한다.

▶ 여기서 '가상 CPU'란 물리적으로 실재하는 서버 CPU가 아닌, 가상 머신에 생성된 CPU라고 생각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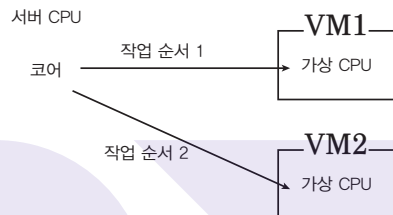
◀▶ 맥락 짚기 할당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고정적으로 귀속시키는 것'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코어의 최대 개수를 지정하는 것'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어떠한 대상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내용이 제시되면, 구분이 되는 지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코어들을 가상 CPU에 할당              |                                |
|------------------------------|--------------------------------|
| 고정적으로 귀속시키는 것                |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코어의 최대 개수를 지정하는 것 |
| 해당 코어들은 다른 가상 CPU에는 사용될 수 없음 | 해당 코어들은 다른 가상 CPU에도 사용될 수 있음   |

3) 따라서 한 VM이 사용하던 코어가, 그다음 순서에서는 다른 VM의 연산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하이퍼바이저는 VM들이 수행해야 할 작업들의 순서를 조정한다.

※ 주목 앞선 할당의 의미와 관련하여 상술이 주어졌으므로, '해당 VM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코어의 최대 개수를 지정하는 것'의 연장선에서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 VM1이 코어 1개를 할당받고, VM2도 코어 1개를 할당받았다고 하자. VM1의 작업이 먼저 진행되어 코어 1개가 VM1의 작업에 사용되었다. 이후 VM2의 작업이 진행될 때, VM1의 작업에 사용되던 코어가 VM2의 작업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코어가 VM1에 할당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VM1에 귀속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문단2-2]. 이때 하이퍼바이저는 코어가 VM1의 작업에 먼저 사용되고, 그다음에 VM2의 작업에 사용되도록, VM들의 작업 순서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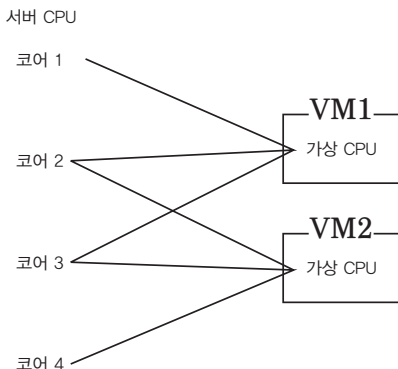


### 문단 3 CPU의 초과 할당

1) 가령, 서버 CPU에 전체적으로 코어가 4개만 존재하는데 두 VM의 가상 CPU들에는 각각 3개씩의 코어를 할당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초과 할당**이 가능한 것은 VM이 할당된 코어 전부를 매 순간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 '초과 할당'에 대한 설명이다. 실제로는 4개의 코어만 존재하는데, 6개의 코어를[→ 4개보다 많은 코어를] VM들에 할당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 이는 VM이 할당받은 코어가 항상 전부 사용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최대 3개의 코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항상 3개의 코어를 전부 사용하지는 않는 것이다.] 가령 VM1과 VM2가 항상 코어 2, 3을 동시에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의 초과 할당이 가능한 것이다.



2) 예외적으로 모든 코어들이 전부 사용되고 있을 때에는 일부 VM의 작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이퍼바이저는 VM의 작업마다 **중요도**를 부여해 두었다가,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요도가 더 높은 작업을 먼저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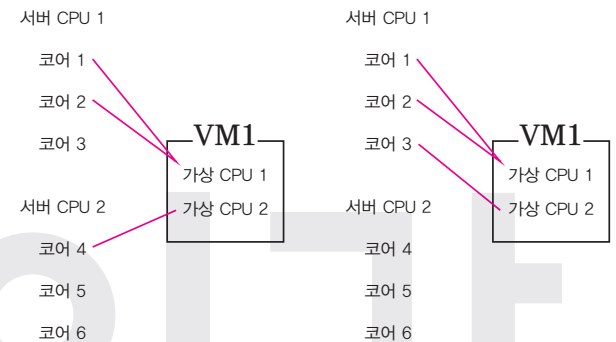
➡ 코어가 초과 할당된 경우에는 VM이 모든 코어를 항상 사용할 수는 없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보다 많은 코어들이 할당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특정 작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이퍼바이저는 작업마다 '중요도'를 부여하여 어떤 작업을 지연시킬지를 정한다.

※ 주목 헷갈리지 말자.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중요도'를 부여한다는 뜻은 아니다. 평상시에 작업마다 중요도를 부여해 두었다가, 지연이 발생할 때에만 이를 토대로 VM들의 작업 순서를 조정한다는 뜻이다.

3) 한편 하나의 VM에 둘 이상의 가상 CPU가 생성될 경우에 그 가상 CPU들 각각에는 반드시 동일한 서버 CPU에서 코어들이 할당된다. 그래야만 각 가상 CPU의 작업에 필요한 연산들의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다.

➡ 하나의 VM에 하나의 가상 CPU만이 생성되지는 않는다. 하나의 VM에 다수의 가상 CPU가 생성되는 것도 가능하다.

※ 주목 다만 이때 '서로 다른' 서버 CPU에서 같은 가상 CPU에 코어들을 할당해서는 안 된다. 즉 다음 그림과 같이 왼쪽의 경우도 가능하고, 오른쪽의 경우도 가능하지만, '가상 CPU 1'이 코어 1, 4를 할당받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문단 4 메모리의 할당

1) 코어는 한 VM에서 다른 VM으로 즉각 바뀌어 할당될 수 있지만, 가상 메모리에 할당되는 자원인 **페이지**는 그럴 수 없다. **메모리**는 연산에 필요한 정보들이 담기는 저장 공간이므로, 특정 VM에 할당되어 있는 페이지에 담겨 있던 정보들이 즉각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메모리의 페이지는 CPU의 코어와는 다른 방식으로 초과 할당된다.

➡ 이때 '초과 할당'이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할당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이루어짐을 내포한다. 즉 하이퍼바이저는 각각의 VM이 얼마만큼의 페이지를 사용하는지를 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2) 이를 위해 하이퍼바이저는 페이지를 할당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 **풍선 드라이버**를 일종의 VM처럼 활용한다. 각 VM들이 할당받은 페이지들을 항상 전부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는 페이지들을 풍선 드라이버에 할당해 두었다가 메모리가 부족한 다른 VM으로 다시 할당해 주는 것이다.

➡ '풍선 드라이버'를 VM처럼 사용한다는 것은, 하이퍼바이저가 풍선 드라이버에도 페이지를 할당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코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페이지'도 항상 전부 사용되지는 않는다[문단3-1]. 따라서 하이퍼바이저는 VM이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는 페이지들을 '풍선 드라이버'에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에 다른 VM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주목 이렇게 '풍선 드라이버'를 거쳐 페이지를 다른 VM에 할당하는 것은, 코어와 달리 사용되던 페이지가 '즉각' 다른 VM에 의해 사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 페이지를 '미리' 풍선 드라이버에 할당해 두는 것이다.

<보기> 문단

**하이퍼바이저**가 VM1과 VM2, 두 개의 VM에 외부 서버의 자원을 할당해야 한다. 서버에는 4개씩의 코어를 가진 CPU가 2개 설치되어 있으며, 메모리의 크기는 32페이지이다. 자원의 할당은 다음의 두 방식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❶ **백락 짚기** 지문에서 소개된 하이퍼바이저의 분배 규칙을 적용하여 (가)와 (나)에서 각각 서버의 자원들이 어떻게 분배될지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가) VM1과 VM2는 각각 4코어의 가상 CPU 1개씩과 20페이지씩을 할당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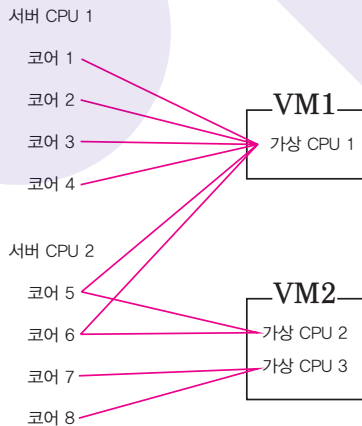
➡ 서버 CPU의 코어가 8개인데, 두 VM에 할당해야 하는 코어도 총 8개이다. 따라서 코어의 초과 할당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❷ **주목** 반면 메모리의 경우 32페이지뿐인데, 두 VM에는 총 40페이지가 할당되어야 하므로, 메모리는 초과 할당이 이루어진다. 즉 '풍선 드라이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나) VM1은 6코어의 가상 CPU 1개와 16페이지를 할당받고, VM2는 2코어의 가상 CPU 2개와 16페이지를 할당받는다.

➡ 반면 이번에는 서버 CPU의 코어가 8개인데, 두 VM에 할당해야 할 코어는 총 10개이다. 즉 코어는 초과 할당이 이루어진다.

❸ **주목** 이때 VM2에 둘 이상의 가상 CPU가 생성된다는 점에도 유의하자 [문단3-3]]. 따라서 VM2의 각각의 가상 CPU들은 '서로 다른' 서버 CPU로부터 코어를 할당받아서 안 된다. 물론 다음 그림과 같이 VM2의 두 가상 CPU가 모두 '동일한' 서버 CPU로부터 코어를 할당받는 것은 괜찮다. 가상 CPU 2, 3 모두 각각 '동일한' 서버 CPU에서 코어들을 할당받고 있기 때문이다.



∴ 다만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서버에 있는 코어의 개수는 8개이므로,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는 코어도 8개뿐이다. 즉 10개의 코어가 동시에 사용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㉔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반면 메모리는 초과 할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서버 메모리는 총 32페이지인데, 할당되어야 하는 페이지도 총 32페이지이기 때문이다.

[14~17] 사회

## 주위 토지 통행권과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 제한

지문 평가

정보량의 밀도는 낮은 편이지만 개념들 간의 위계를 정확하게 읽어 내는 것이 관건인 글이다. '약정 통행권, 법정 통행권'을 구분하여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법정 통행권이 없어도 가능한 경우'를 다시 앞선 두 권리와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키워드

사회 - 법학 - 민법, 주위 토지 통행권

공로, 통행 지역권, 민법, 법정 통행권, 주위 토지 통행권, 법원, 판례

문단 1 타인의 토지 통행

사람이나 차가 다니는 큰길인 **공로**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토지는 이용에 제한이 따르고 경제적 효용도 현저히 낮다. 해당 토지 소유자는 주위에 있는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여 통행할 수밖에 없다. 만약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인 **통행 지역권**을 설정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분쟁의 소지가 없지만, 이러한 약정 통행권이 없는 경우에는 통행 관련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❶ **백락 짚기** 글의 초점이 주어지는 대목이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토지가 '공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여 통행 지역권이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 불가피하게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권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파악하는 것이 독해의 초점이다.

- 문제 상황 : 통행 관련 분쟁
- 문제 원인 : 약정 통행권 ×
- 해결 방안 : ?

문단 2 주위 토지 통행권

1) **민법**은 이웃한 토지 소유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당사자 간 계약 이외에 법률 규정에 따라 성립하는 **법정 통행권**으로 주위 토지 통행권을 두고 있다. **주위 토지 통행권**은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통행로를 확보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로로 삼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토지의 용도에 부합하는 통행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이다.

❷ **백락 짚기** 약정 통행권과 법정 통행권 → 주위 토지 통행권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는 계약에 의해 발생한다면, 후자는 계약 없이도 법률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 약정 통행권          | 법정 통행권       |
|-----------------|--------------|
|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발생 | 법률 규정에 의해 발생 |

➡ 따라서 **악정 통행권이 '없는'** 경우에도, 정당하게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다. 법정 통행권인 '주위 토지 통행권'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 **주목** 그렇다면 그중에서도 '주위 토지 통행권'은 어떻게 확보되는지, 그 요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법률 지문을 읽을 때에는 특정 법률 및 권리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첫 번째 요건이다.

❶ 토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로로 삼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곧바로 공로에 출입할 수 있어도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여야 한다.

2) 이 통행권은 주위 토지 소유자의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으며, 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통행권자는 통행으로 인해 발생한 여타 손해에 대해 주위 토지 소유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 나머지 요건도 주어졌으니, 정리하자.

❶ 토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로로 삼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곧바로 공로에 출입할 수 있어도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여야 한다.

❷ '주위 토지' 소유자의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 또한 두 요건을 갖추어 '주위 토지 통행권'을 인정받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통행권자가 주위 토지 소유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3) 다만 공로에 연결되어 있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되어, 다른 토지를 통과해야만 공로에 연결될 수 있게 된 토지의 소유자는 손해 배상 의무에서 면제된다.

※ **주목** 예외 사항이 기술될 때에는 항상 주의해야 한다. 본래에는 공로와 연결되어 있던 토지의 소유자가, '양도' 등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주위 토지'를 통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타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없다.

### 문단 3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가 제한된 경우

1) 한편 토지 소유자가 개발에 따른 이익을 기대하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토지를 도로, 수도 시설의 매립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여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가 일부 제한된 경우에는, 법정 통행권 없이도 해당 토지에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다. 이때 행사의 제한은 토지 제공 목적과 양립하기 어려운 권리에 한정된 것이므로, 토지 제공 목적에 부합하는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리는 유지된다.

※ **맥락 짚기** 글의 초점이 전환되는 대목이다. 문단2까지는 주위 토지를 '통행해야 하는' 토지 소유자의 입장이었다면,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위해 토지를 내놓는' 토지 소유자의 입장인 것이다.

➡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자발적으로 일반 공중을 위해 제공하였다면 [→ 일반 공중의 사용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권리 행사가 일부 제한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법정 통행권' 없이도 통행이 가능하다.

2) 권리 행사가 제한된 토지는 상속되더라도 여전히 그 상태가 유지되며, 권리 행사가 제한된 토지의 소유권을 매매 등으로 승계한 이도 그러한 사정을 용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 기존의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토지를 제공하면 해당 토지는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 해당 토지가 상속,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권리 행사는 '여전히' 제한된다.

3) 하지만 매매 과정에서 권리 행사 제한이 외관으로 표시되지 않았거나 취득가액에 반영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 승계인의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이 허용된다.

※ **맥락 짚기** 직전 설명에서는 '상속, 매매'를 구분할 이유가 없었으나, 이 대목에서는 '상속, 매매'를 구분해야 한다. 상속과 달리 '매매'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더 이상 권리 행사가 제한되지 않기[→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 상속                    | 매매                                         |
|-----------------------|--------------------------------------------|
|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가 여전히 제한됨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가 더 이상 제한되지 않음 |

※ **주목** 이때 그 '특별한 사정'의 예시로 다음 두 경우가 주어졌다. 마찬가지로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잘 챙겨두자.

1. 매매 과정에서 권리 행사 제한이 외관으로 표시되지 않음  
2. 권리 행사 제한이 취득가액에 반영되지 않음

4) 또한 토지가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경위가 불분명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 법원은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비교 형량을 하여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 애초에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경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즉 토지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이 맞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원이 과연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가 제한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비교 형량'이 이루어진다.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소유권 보장 > 공공의 이익 ⇒ 권리 행사 제한 ×  
소유권 보장 < 공공의 이익 ⇒ 권리 행사 제한 ○

### 문단 4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이 허용되는 경우

1) 어떤 토지가 일반 공중을 위해 도로 등으로 이용되는 상황에서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이 허용되면 토지 소유자는 도로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지방 자치 단체나 통행권자를 상대로 부당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부당 이득액은 해당 토지의 현재 이용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 평가하여 정하게 된다.

➡ 어떤 경위에서든 기존에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던 토지'에 대해 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이 허용되는[→ 더 이상 소유자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다.

➡ 이때 토지 소유자는 지방 자치 단체나 통행권자를 상대로 '부당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다만 판례에 따르면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이 허용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임의로 통행의 차단 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설 경위가 어떠한 토지가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이용되는 상황이라면 이는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다만 판례에 따르면, 설령 소유자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지 않더라도, 더 이상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보기> 문단

1)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X에는 이웃 토지로부터 흘러든 오수가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이에 갑은 이웃 주민 **을**로 하여금 X에 우수관을 설치하여 매립하도록 하는 한편, 을을 비롯한 이웃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X를 자발적으로 제공하였다. 이후 갑은 X를 **병**에게 상속하였는데, 병은 이를 다시 정에게 매도하였다. X를 매입한 **정**은 을에게 우수관 철거와 함께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 이득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 사안에 대해 **법원**이 내린 판결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백락 짚기** '토지 X'의 소유자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매도'가 이루어진 상황에 유의해야 한다. 상속과 달리, 매매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X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 행사가 더 이상 제한되지 않기 때문이다[문단3-3].

➡ 갑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였다. 따라서 갑이 소유자인 시점에서는 X에 대한 권리 행사가 제한되었을 것이다. 이는 '상속'으로 X의 소유자가 된 '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주목** 다만 '정'의 경우에는 다르다. 정은 병의 '매도'로 X의 소유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정'은 통행권자인 을에게 부당 이득의 반환을 청구했는데, 이는 '정의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이 허용되었음'을 함축한다[문단4-1].

2) 첫째, 갑은 X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X에 대한 정의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은 허용된다. 셋째, 정은 을에게 부당 이득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넷째, 정은 X에 있는 도로에 통행을 막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 첫째, 갑은 자발적으로 X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였다고 보았다. 우리의 이해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그대로 수용하고 넘어가면 된다.

∴ 둘째, 현재 X의 소유자인 정의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이 허용되었다. 이 역시 우리가 추론한 내용에 부합한다. 이는 곧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다는 뜻이다[문단3-3]. 따라서 ②번 선지는 적절하다.

➡ 셋째, 정은 을에게 부당 이득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역시 우리가 이미 앞서 추론한 내용에 부합한다.

➡ 넷째, 다만 정의 임의로 통행의 차단 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X에 대한 권리 행사가 제한되지 않더라도, 통행로로 사용되는 정도는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문단4-2].

[18~21] 현대소설

「우리 동네 최 씨」

— 이문구 —

수록 지문 평가

1970년대 한국 농촌의 실상과 그 변화 양상을 그려 낸 이 작품은 방언을 통해 배경이 되는 지역의 정서를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자신의 삶을 지켜 나가 고자 하지만 외적 요인들에 의해 그 바람을 이루기 힘든 상황에서 주인공의 자의식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자.

[앞부분 줄거리] 농한기에 공기총으로 새를 사냥할 수 있게 한 당국의 조치가 불만스러운 농민 최진기는 어느 날 도시 청년들이 자기 집 안팎을 오가며 새 사냥을 하자 달려와 면장갑을 낀 청년과 운동복을 입은 청년 등에게 남의 집 안에 함부로 총질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면장갑이 대거리할 짓둥이[→ 맞서서 대들려고 하는 모양새]로 양바툼한 몸을 뒤로 젖혀 곧댓짓을 하며 바르집어 말했다.

“어디 방송인지 모르겠네[→ 상대가 한 얘기가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빈정거리는 말]. 우리가 오면 여기 사람들은 앉아서 버는 셈 아니오. 보태 주는데도 고민이셔.”

“보태 주는 것 같은 소리 허구 있네. 돌팍 하나, 나무 뿌레기 하나 래두 뒤져 갔으면 뒤져 갔지 이런 촌에 뭘 보태 줘어? 자네덜은 여기 와야 석유 냄새뻐이 냉기는 게 읍어.”

“새 잡아 주면 논농사 잘되지, 요새 보리밭 밟아 주면 보리농사 잘되지, 도시 사람 자주 드나들면 땅값 오르지…… 낚시꾼이나 수석 채집꾼보다는 우리가 나아도 열 배나 낫지 무슨 소리여.”

➡ '면장갑'이라고 지칭된 청년과 '운동복'을 입은 청년은 오토바이를 타고 이 마을에 와서 새 사냥을 하던 중이다. 여기 와서 남기고 가는 것이라야 석유 냄새뻐이라는 최 씨의 말에, 청년들은 오히려 이곳에 보태 주는 것이라 큰소리치며 자신들은 낚시꾼이나 수석 채집꾼보다 낫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농촌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 것이 새 사냥꾼만은 아니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면장갑의 말취갑(= 이리저리 말을 잘 둘러맞추는 일)에 최는 한참이나 입안을 더듬고 나서 시르죽은(= 가죽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면장갑'의 말에 마땅히 대꾸할 말을 못 찾고 있는 최 씨]

“바둑 두다 말구 장기 벌리네…… 도싯느 열이 옛장수 하나만 못혀. 옛장수는 혼것 두어 가지 가져가면 한 가지래두 새걸 주지만, 도싯 늪덜은 새걸 가져가두 말짱 거저더라 이 얘기여. 그런디 뭇이여? 농사지을 만허라우 새를 잡아 주어? 워너니(= 잘도) 그렇것다. 속달 늪 달 장마에두 물에 안 빠져 죽구, 이태 삼태 송년[→ 이년삼년 흉년]에도 굶지 않는 게 샌디, 집[→ 상대방을 칭하는 말]이 총 땃 방 놔 준다구 새가 축나졌구먼?”

“그러면 참새를 잡더라도 값을 하고[→ 돈을 내고] 잡아라 이겨요?”

면장갑이 총 개머리판을 한 손으로 두들기며 성질 있는 입처럼 떠들었다.

최는 조무래기들이 가을 한철 새 보기로 나서면 벼가 한 가마라는 생각이 불현듯 앞을 가렸으나 얼른 흔들어 없애 버리고

▶ 가을에 아이들을 시켜 논 주위의 참새를 쫓아도 참새가 먹어 없애는 벼를 한 가마는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떠올라서, 참새 사냥꾼이 농사에 도움이 된다는 '면장갑'의 말이 일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말에 수긍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 생각을 열른 털어 버리는 것이다.

“으른(=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두 떡을 은어먹는 뱀인데, 배운 사람덜이 워째 내 주장만 있구 바깥귀는 옳는겨? 내가 시방 새 잡은 걸 말허는겨? 총 가진 늑은 무슨 조건으루 사람 사는 집 울너에서 총질이 예사더냐 이 얘기에.”

▶ 집주위에서 총을 쏘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최가 다시 언성을 높이자 청년도 같은 어조도 대답했다.

“하여간 사람만 안 다쳤으면 그만 아노?”

“여게, 차라리 총에 칼을 꽂어. 츄버터 얼집 들어[→ 처음부터 겁먹어서] 말이나 안 붙이게…….”

▶ 상대방이 하는 총질이 어차피 그만큼이나 위협적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오나가나 사람 맛 뚱어 사랑 못 한다더니…… 여보슈, 촌 인심이 이런 줄 알았으면 오지도 않았을 거요.”

“촌 인심을 뉘라 베려 났간디? 야속해힐 것 옳어. 하나만 지나가두 애번 표 나는 게 도싯것덜이여. 오죽하면 집이더러[→ 당신한테] 이러겠나……. 암만 바빠두 게 줌 서 있어. 바탱이가 금 갔는지 웡배기가 귀났는지, 장광(= 장독대)버텀 살펴봐야 쓰강응께. 접때두 워편 작 것(= 잡것. 점잖지 못하고 잡스러운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 오너서(=와서) 고내기(= 오지크릇의 하나)에 삼팔선을 굶구[→ 금 가게 하고] 내뺏더란 말여.”

▶ 집 주위에서 총질을 하다 세간을 부순 것은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말을 장황하게 하고 있다.

최는 그렇게 다져 놓고 들어와 장광을 찻찻이 기울여 봤으나 트집 할 데가 없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냥 숙어들기도 짐직한 노릇이었다. 그래서 그는 막걸리 마신 오줌 한 차례 동안이나 뒤뚱을 건성으로 둘러보았던 것이다.

▶ 세간에 피해를 준 것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냥 보내기에는 자존심 상하는 것 같아서 괜히 시간을 좀 끌고 있다.

참새가 결눈에 묻어난 것은 우복하게 육은 노간주나무들을 훑어 볼 때였다. 겨우내 굴뚝 냇대로 시달렸음에도 누렁잎 하나 안 지고 견던 노간주나무 가장귀에 참새가 걸려 있던 것이다. 얼핏 보기에 서너 마리가 넘는 것 같았다. 총 맞고 가지 틈서리로 떨어지다가 걸리는 바람에 청년들이 못 본 것 같았다. 형재를 한 셈이었다. 최는 모처럼 흐뭇해서 으응그러졌던 마음을 누그러뜨렸다. 다친 세간이 없는 것도 드문 일이었지만, 그들 말마따나 보태 준 물건[→ 참새]이 처음으로 눈앞에 놓여 있는 까닭이었다.

▶ '면장갑' 일행이 사냥한 참새가 자기 집 안에 있는 나무의 가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최 씨의 기분이 풀린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참새가 거기 걸려 있는 이유는 그들이 최 씨의 집 안쪽을 향해 총질을 했기 때문이다.

#### (중략)

아침부터 까질러 나가 마실로 해를 삶고[→ 이웃에 놀러 다니는 일로 낯 시간을 다 보내고] 다 저물어 들어온 아내가, 들어단작 왜뚜리쟁반 뺏다 붙이는 소리[→ 커다란 쟁반을 번쩍 들어서 내뺏개치는 소리. 즉, 큰소리]만 안 질렀더라도 그는 생각 따라 그렇게 했을 거였다.

▶ 최 씨는 '면장갑' 일행이 흘리고 간 참새를 구워 먹으려던 참이다.

“떡허니 큰새(= 닭)는 잡어 놓고 왜 해필 참새버텀 군디야.”

하여 돌아보니, 한참 손질해야 남 보기에도 여편네 비스름해 보일 얼굴에 독살이 시퍼렇게 오른 채로 씨근벌떡이던 거였다.

최는 엉겁결에 부지깽이를 들며 뒤로 물러섰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되 그전처럼 물어뜯으려 덤비면 부지깽이가 몇 도막이 나더라도 버릇을 고쳐 줄 결심을 함께 했던 것이다.

▶ 외출했다 돌아온 최 씨의 아내가 화가 나 있는데, 아직 최 씨는 그 이유를 모르고 있다. 이유는 모르되 위협감을 느껴서 자기도 모르게 부지깽이를 든 채 방에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잘헌다. 수탉 두구 암탉 잡구, 암탉 두구 새 귀 먹구…… 이렇게 평생을 우그렁바가지루 사는겨.”

▶ 최 씨가 수탉도 있는데 굳이 알 낳는 암탉을 잡았으며, 그 암탉을 잡아 놓는 굳이 그보다 먹을 것 없는 참새를 구워 먹고 있다는 말이다. 최 씨도, 독자도 아직 최 씨 아내의 말이 무슨 뜻인지 어리둥절하다.

아내는 안 보이던 한 손을 최의 코뿔배기에 낚다 내던졌다.

▶ 한 손을 몸 뒤로 돌려 뭔가를 붙잡는 채 숨기고 있다가 내던진 것이다.

최는 날아오는 것을 재빨리 부지깽이로 후려쳤다. 발등으로 떨어진 것은 별건 암탉이었다.

최는 닭장을 살폈다. 한 마리가 안 보여 다시 들여다보니, 늘 철망 위로 날아 나와 나뭇동 틈에다 알을 빠뜨리고, 변차섭이네 보리밭만 죽살 내어 말쑥이던 그 닭이었다.

“새총에 닭이 빠드러진 것두 모르구 새 새끼 흘리고 가기만 기다린 저런 위인을 언태껏 밥 따루 국 따루 식을세라 데워 바쳤으니…….”

▶ '면장갑' 일행의 총질에 닭장 안에 있던 암탉이 죽었는데, 최 씨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참새 몇 마리가 공짜로 생겼으며 좋아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는 닭과 부지깽이를 바꿔 들고 살펴보았다. 어디를 어떻게 맞았는지 물 끓여 튀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겠으나 운동복이 울안에서 나오며, 큰새 잡아 놓고 참새만 주워 가기가 억울하다던 말에 맞춰 보면 영락없이 그것들 짓이었다.

최는 부끄러웠다. 도시 사람 열이 촌 옛장수 하나만 같지 못하다고 흰소리 치고서도 코앞의 하찮은 잇속에 눈이 가려 바더리 쫓다가 왕 통이에게 썬 꼴[→ 작은 벌을 쫓아 버리려다 커다란 말벌에게 쏘인 꼴]을 당한 것이 못내 부끄럽던 것이다.

[22~26] 현대시

## 「면면함에 대하여」

— 고재중 —

### 작품 평가

‘면면함’의 사전적 의미는 ‘끊어지지 않고 죽 잇따라 있음.’이다. 고통스러운 겨울을 이겨 내고 봄을 맞은 느티나무의 생명력 넘치는 모습과 이를 보며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얻고 삶을 면면히 이어 나가는 농촌 사람들의 모습을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반복, 감각적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형상화한 작품이다.

### 제 1연 동구 밖 느티나무의 푸르른 울음소리

너[→ 청자] 들어 보았니

저 동구 밖 느티나무[→ 시적 대상]의

푸르른 울음소리[→ 공감각적 상상, 청각의 시각화]

- ▶ 시적 청자를 설정하여 ‘동구 밖 느티나무’의 울음소리를 들었냐고 물으며 청자로 하여금 느티나무의 ‘울음소리’에 주목하도록 이끌고 있다.

### 제 2연 흑독한 겨울을 견디던 느티나무

날이면 날마다 삭풍(= 겨울철에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 바람) 되게는 치고

우듬지(= 나무의 꼭대기 줄기) 끝에 별 하나 매달지 못하던

지난겨울[→ 작은 희망조차 가질 수 없었던 시기]

온몸 상처투성이인 저 나무

제 상처마다에서 뽑아내던

푸르른 울음소리

- ▶ 제2연에서는 느티나무를 ‘온몸 상처투성이인 저 나무’로 구체화하여 제언에서 언급한 ‘푸르른 울음소리’를 부연하고 있다. 즉, ‘푸르른 울음소리’는 작은 희망조차 가질 수 없을 만큼 흑독했던 ‘지난겨울’에 ‘상처투성이’의 느티나무가 ‘제 상처마다에서 뽑아내던’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느티나무가 시련과 고통에 굴복하지 않고 이를 견뎌 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 ‘푸르른’은 ‘상처투성이’의 멍든 이미지를 환기하기도 하지만, 푸른 이파리로 가득한 나무의 생명 넘치는 이미지를 환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푸르른 울음소리’에는 슬픔, 고통과 더불어 생명력과 희망도 담겨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 제 3연 시련을 견뎌 내는 사람들과 느티나무

너 들어 보았니

다 청산하고 떠나 버리는 마을에

잔치[→ 공동체의 행복한 삶]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래도 지킬 것[→ 공동체의 삶]은 지켜야 한다고

소리 죽여 흐느끼던 소리[→ 남아 있는 사람들의 울음소리]

가지 팽팽히 후리던[→ 휘둘러서 때리거나 치던] 소리

- ▶ ‘소리 죽여 흐느끼던 소리’는 삭풍이 가지를 팽팽히 후리는 시련을 견뎌 내는 느티나무의 울음소리와 닮아 있다. 이는 쇠락한 농촌을 떠나는 사람들로 인해 공동체가 해체되어 가는 현실 속에서도 공동체의 삶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보여 주고 있다.

### 제 4연 시련을 이겨 내고 봄을 맞은 느티나무

오늘은 그 푸르른 울음

모두 이파리 이파리에 내주어

저렇게 생생한 초록의 광휘[→ 초록 잎의 환하고 아름다운 빛]를

저렇게 생생히 내뿜는데

- ▶ ‘푸르른 울음’을 ‘이파리’에 내어 주어 ‘초록의 광휘’를 내뿜게 되었다는 것에서 느티나무의 ‘푸르른 울음소리’가 생명력과 희망의 의미도 내포한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시련과 고난의 겨울을 견뎌 내고 마침내 봄을 맞이하여 초록 잎을 무성하게 피워 낸 느티나무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 제 5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

앞들에서 모를 내다

허리 펴는 사람들

왜 저 나무 한참씩이나 쳐다보겠니[→ 느티나무를 보며 위안을 얻는 사람들]

어디선가 북소리[→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 주는 흥겨운 소리]는

왜 뚝뚝 울려 나겠니

- ▶ 지난겨울을 견디고 무성하게 잎을 피워 낸 느티나무처럼 사람들은 봄에 모를 내며 자신들도 다시 좋은 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위안을 얻는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북소리는 쇠락한 농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이감